



Guideline on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Owner entity *	[12,375,311] CIB and Group Deputy Executive Management / CIB - Pole Corporate and Institutional Banking / ITO / CCCO / IT Risk & Cyber / World CIB / APAC / Korea / BNPP Securities Korea Co Ltd / KOREA, REPUBLIC OF			
Co-owner entity (ies)				
Involved Process(es)*	L1 - PR00007 Risk	Select an item	Select an item	
Involved Risk(s)*	L1 - RIT0009 / L2 - RIT0060 Failure in risk management / L3 - RE00621 Personal data not processed lawfully and according to personal data principles	L1 - RIT0009 / L2 - RIT0060 Failure in risk management / L3 - RE00626 Personal Data Breach - breach of confidentiality, availability or integrity		
Keywords				

Level *	Level 3			
Procedure type *	4- Operational procedures			
Scope of Application: Applying entity (BU, BUG, OE, LE) *	11,199,789 - CIB			
Scope of Application: Covered entity (BU, BUG, OE, LE) *	11,199,789 - CIB			
Geographical Scope of Application: Applying entity (region, territory) *	APAC-Korea, Republic of - KR	Select an item	multiple selection possible	BNPP Securities Korea
Geographical Scope of Application: Covered entity (region, territory) *	APAC-Korea, Republic of - KR	Select an item	multiple selection possible	BNPP Securities Korea
To Adapt Locally *	Applied as such OR transposition			
Classification rule *	Internal			
Author(s) * or drafting team	Dongkyu KIM			
Author role *	<i>Credit Information Administration Protector, Chief Privacy Officer,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i>			
Validator(s) *	Simon KIM, CEO / Risk Management Committee Jinil SONG, Head of Risk / Risk Management Committee Sun Young LEE, Head of Compliance Hae Young CHOI, Statutory Audit / Risk Management Committee			
Validator role	<i>CEO, Head of Risk, Head of Compliance, Statutory Auditor</i>			

Reference *	CIBL3-17459-KO
Version *	3.0



Validation date *	21/04/2026
Publication date *	07/05/2026
Effective date *	07/05/2026
Renewal date *	07/05/2029
Strict parent procedure (strict parent link to cascade the norm) **	RISK0379 General Policy of the BNP Paribas Group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ffiliated parent procedure(s) (parent link(s) for the operational implementation) **	
Regulatory text(s) / legal provision(s)	
Control plan(s)/control (s) re. if any	

* Mandatory fields ** Mandatory fields when relevant: if the field is not completed, it means it is not relevant

All roles, responsibilities and tasks mentioned in this document are undertaken by BNP Paribas Employees without distinction of gender.

EXECUTIVE SUMMARY

Guideline on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pplied to Securities Korea.

이 절차는 비엔피파리바 증권의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임

**Document Maintenance History**

Version Number	Modified by	Comments	Modified Pages	Date
1.0	CAO	Creation		2018.3.13
2.0	Risk	Managerial support department for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changed to Risk Author department changed to Risk	5	2018.8.14
2.1	Risk	No change (periodic review)		2020.3.4
2.2	Risk	No change (periodic review)		2021.10.21
2.3	Risk	No change (periodic review)		2022.04.27
2.4	CIAP	Author changed Procedure template changed Periodic review Appendix	All	2026.04.21

Distribution/Mailing List

Department/Function	Name/E-mail Address
All Departments	DL BNPPSO



제 1 장 총 칙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 정의)..... 6

제 3 조 (다른 사규와의 관계)..... 6

제 2 장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등 6

제 4 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6

제 5 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7

제 6 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공개)..... 7

제 7 조(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지원조직)..... 8

제 3 장 신용정보의 처리기준 8

제 8 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에 대한 동의)..... 8

제 9 조(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8

제 10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9

제 11 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9

제 12 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10

제 13 조(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11

제 14 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12

제 15 조(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12

제 4 장 신용정보의 보호조치 등 13

제 16 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13

제 17 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13

제 18 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오·남용 금지)..... 14

제 19 조(투자권유대행인의 모집경로 확인 등)..... 14

제 20 조(조사 및 제재)..... 15

제 5 장 신용정보의 누설 통지 등 15

제 21 조(개인신용정보 누설의 예시)..... 15

제 22 조(누설 통지 방법 등)..... 15

제 23 조(누설 신고)..... 16

제 24 조(누설 피해 최소화 대책)..... 16

제 6 장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6

제 25 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17

제 26 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18



제 27 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18

제 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19

제 29 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19

제 30 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20

제 7 장 신용정보의 집중 및 관리 등..... 20

제 31 조(미수정보의 관리기준)..... 21

제 32 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관리)..... 21

제 33 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인터넷망 이용)..... 21

Appendix.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2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감독세칙'이라 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 관리 등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등을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다른 사규와의 관계)

- ①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등

제 4 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 ①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정보유출 대응매뉴얼(contingency plan)의 마련
8. 관리적 보안대책 시행결과에 따른 시정·개선에 필요한 조치
9.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2.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④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과정에서 임직원의 신용정보 무단조회, 오·남용 등 주요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직원으로 하여금 경위서의 제출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위반사항의 경우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공개)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공개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지원조직)

- ① 신용정보 관리·보호 업무에 관한 관리적 보호대책에 관한 지원조직은 리스크관리부로 하며, 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에 관한 지원조직은 정보보안부서 및 **COO Office**로 한다.
-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관련 부서에 신용정보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신용정보관련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3 장 신용정보의 처리기준

제 8 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에 대한 동의)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주민등록번호
- 2. 여권번호
- 3. 운전면허번호
- 4. 외국인등록번호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목적
- 2. 처리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 3.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 9 조(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①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제 10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필수적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 가.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3자 제공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
2. 선택적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사항
 - 가.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사실
 - 나.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3자 제공 시의 혜택

③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제 11 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회사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녹취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8조제2항 각 호, 제9조 각 호,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하, "동의시 필수고지사항")과 제5항의 고객권리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양식에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거나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인 경우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동의 받는 경우에는 제6장(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따른 고객의 권리사항 등이 포함된 고객권리안내문을 사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동의방식의 특성상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 12 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회사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수탁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주요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공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2.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의 이용·보관 기간(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
- 2. 개인신용정보를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의 결과

제 13 조(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법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탁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기업
-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중 1인 이상을 지정 한자

③ 회사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

④ 회사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감독규정에 따른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수탁자에게 교육하거나 수탁자가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 실시하도록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 2.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

⑥ 회사가 수탁자와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점검 및 교육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수탁자가 그 신용정보의 처리를 제3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재수탁자간의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에 따른 수탁자 점검 및 교육확인서와 재수탁자 임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1.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고객정보의 내용



- 2. 채수탁자 및 채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3. 채수탁자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4. 채수탁자의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 5. 수탁자가 채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채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제 14 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①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개인신용정보(이하 '선택적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법에서 정의한 개인신용정보(이하 '필수적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의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 2. 회사가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의 접근권한 부여 및 그 이용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법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회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제2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된 날이라 함은 계좌의 적극적 폐쇄, 보험의 해약(소멸), 퇴직연금의 해지 등 고객과의 모든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제 4 장 신용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 16 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① 회사와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은 경우를 포함)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오·남용 금지)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정보가 분실, 유출, 도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 받아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불필요한 권한을 부여 받았을 경우 해당 권한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권한의 회수 요청 등의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관련정보를 판매, 대여 등 제공하는 행위 및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마케팅, 기타 업무의 목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 범위의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이 업무상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의 이상·과다 조회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 19 조(투자권유대행인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투자권유대행인을 관리하는 부서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법에 따른 모집업무(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 2.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 3.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정보 파기 여부
- 4. 제3호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 투자권유대행인 관리부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기관(금융투자협회)에 알려야 한다.

제 20 조(조사 및 제재)

- 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련부서, 영업점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5 장 신용정보의 누설 통지 등

제 21 조(개인신용정보 누설의 예시)

회사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볼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2.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3.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제 22 조(누설 통지 방법 등)

① 회사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회사는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기간 동안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 15일
-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 15일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 : 15일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제24조에 따른 누설 피해 최소화 대책 등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미확인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누설 신고)

① 회사는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4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감독규정 별지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누설신고서]에 따른 신용정보 누설 신고서를 통하여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3항 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누설 피해 최소화 대책)

회사는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 6 장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 25 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가 7일 이내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의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의 이용이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한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3. 성과관리
- 4. 위탁업무의 수행
- 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한다.

⑥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에 대해 통지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1항의 조회사항(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에 따라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제6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회사는 제6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정기적으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간격을 연1회 이상으로 한다.



⑨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6 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 할 수 있다.

-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③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대상정보와 정정 청구사유를 받아, 정정청구 사유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 대해 처리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결과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회사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 2. 회사로부터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⑥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와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 3. 회사가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4.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제26조 제2항의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회사는 법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신용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이 어려워지거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홈페이지,
- 2. 유무선 통신
- 3. 서면
- 4. 영업점 방문을 통한 동의 철회서 제출 등

-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 및 연락 중지에 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 주체가 연락 중지에 대한 요청을 하였을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29 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① 신용정보주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② 회사는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삭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삭제청구 처리 대장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 30 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회사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여야 한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4.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신용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③ 회사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장 신용정보의 집중 및 관리 등



제 31 조(미수정보의 관리기준)

- ① 동결계좌 요건에 해당하는 미수발생 정보나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 발생정보(이하 '미수정보'라 한다)의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미수정보가 발생하거나 그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미수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장(신용정보의 관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4. 미수정보 등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2 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관리)

- ① 대출정보 등 신용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기업 및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능력정보 등 신용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련 신용정보가 발생하거나 그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 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인터넷망 이용)

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인터넷망"을 통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지켜야 한다.

- 1. 신용정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신용정보 인터넷망의 조작자를 지정하고 동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터넷망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 2. 인사이동, 기타의 사유에 따른 조작자 교체 임명시에는 지체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Appendix.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Responsibility	Department	Title	Name
<i>Credit Information Administration Protector</i>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ITO CCCO	CIAP, CPO, CISO	Dongkyu KIM 김동규